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과학관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2026. 11.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과학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목적

가. 성신여자대학교 과학관 공사 재착수 전 건축물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부식 및 훼손 정도에 따라 현재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가능 여부 확인

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현재 건축물의 구조성능을 확인하여 현재 잔존수명을 확인하고 보수·보강 시행 후 기대 잔존수명 확인

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정확한 위치와 세부적인 적합한 공법 제출 및 공사비 산출

라. 보수·보강 후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사비와 철거하는 경우 신축 공사비 산출

마. 위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3. 과업개요

가.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027. 1. 31.까지

나. 과업장소: 성신여자대학교 과학관(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구조	규모	연면적	준공(사용승인)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7층	10,502.25㎡	1970. 11. 25

II 과업 내용

1. 주요 추진 및 과업 내용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건축물관리법」의 안전진단 관련사항을 준용하여 대상 건축물 전반에 관한 상태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자료분석: 참고용 자료 검토(평면도, 구조도면, 내진설계)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가)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나) 강재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필요 시)

2) 현장 재료시험

가) 콘크리트 시험: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코어 압축강도시험, 철근 배근탐사, 철근 부식도 조사 등

나) 강재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 등 (필요 시)

다) 기타 발주처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3) 상태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다)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라)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현재 건축물의 잔존수명(현재 안전등급) 과 보수·보강하는 경우 기대 잔존수명 소견 필수**

4) 안전성평가

가)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작성·분석

다)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나) 기대 잔존수명 평가 후 리모델링 공사 가능 여부 제시

다) 보수·보강 후 리모델링하는 경우 공사비와 철거하는 경우 신축공사비 산출

6) 보수·보강방법

가) 결함정도에 따른 적합한 보수·보강 방안 제시

나) 정확한 위치와 보수·보강 공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가) 구조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최종 결과서 5부 및 모든 과업 결과품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납품
(HWP, CAD, 사용한 전용프로그램 원본파일 등)

2. 세부사항

가. 신청자격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단일계약 3천만원 이상 정밀안전진단 실적 2건 이상인 업체**

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or.kr)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상태가 입찰공고일 기준 '정상'인 업체

※ 기타 자격은 입찰공고문 참조

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용역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용역 시행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처에서 인정할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다.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1) 균열 폭이 비교적 크고 외관 조사 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기둥·보 등 안전성평가가 구조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

측정 등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각종 측정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지침에 따라 대상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협의 결정하고,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검·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 법정 진단측정장비 중 교정 필수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문분야	진단장비명		교정주기 (월)	비 고
공통	염분측정장비		12	
	도막두께측정장비		12	
	측량기	수준기	24	레벨
		각도측정기	24	데오도라이트
		거리측정기	24	광파측정기
건축	진동측정기		12	

3) 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시료채취 등이 필요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한다.

4) 도면에 사용되는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을 기준으로 작성

5) 도면작성은 CAD프로그램을 사용

6)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밀리미터(㎜)로 표시

7) 표기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표기숫자는 일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9) 도면의 축척은 출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해서는 가능한 통일

10) CAD 작성 시 작도영역 내 모든 문자의 폰트 및 스타일은 단순, 간결하게 사용

11)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크기를 축척에 맞게 작도하고 정확하게 치수기입

12) 기존 내진설계 자료를 분석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내진설계를 계약대상자가 직접 보완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공법을 시방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완성된 설계도서 중 중대한 결함이 지적될 경우, 과업의 완성 이후라도 이의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라. 외관조사: 대상건축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로서 진단부위 및 진단사항은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마. 부재 손상조사(콘크리트 및 강재)

1) 수평 및 수직균열

2) 박리박락, 철근노출, 백화현상

3) 열화, 골재분리

4) 철근의 부식, 누수, 체수

5) 강재부식, 변형조사, 강재도장, 상태조사(필요 시)

6) 주벽 등 벽의 휨 발생여부(전도 가능성 여부 등)

7) 처짐 조사, 경사 또는 침하

바. 비파괴 시험

1) 각종 시험의 방법 및 항목은 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가능한 이전 시험 장소를 포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시험개소 및 빈도는 현장 여건 감안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실시)

2) 비파괴 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파괴 시험 결과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

사.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지침의 기준에 맞춰 전체 시설물에 대한 상태등급을 매겨야 한다.

아. 콘크리트 강도조사

1) 비파괴검사법: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을 조합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검사법을 사용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료채취: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위선정

3) 균열조사: 균열양상, 심도, 균열폭등을 각 부재별로 조사한다.

4) 균열조사장비: 균열의 폭 및 길이 측정(크랙스케일, 균열 등)

5) 측정된 균열을 자료화(도면, 사진대지 등 발주처의 요구에 맞는 형식)

자.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1) 구조체 변위 조사, 시설물의 손상부위 및 손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외관조사,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상태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즉시 이 시설을 발주처에 우선 보고하고, 보수방안을 제시

4)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건축구조설계기준』을 적용하되, 설계 당시 시방서 기준과 최근 시방서 기준을 비교 평가하여 검토

5)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및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공법 제시

1) 향후 대상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및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기본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공법의 시방서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시 필요한 경우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공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가)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나) 보강설계도면(보강위치, 보강자재 등)

다) 공사비 산정(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기본설계 등)

마)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 후, 필요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방법 제시

카.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1)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은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각 구조물 별로 작성

2) 단기(부분)보수대책은 전면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추정소요예산)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타. 종합결론

1) 계약대상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로부터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4)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파. 기타 사항

1)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미비하거나 추가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추가조사 및 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한다.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
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전자매체(한글파일 등)로 작성하여야 한다.
7)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본 용역은 시설물안전법 및 지침에 따른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사)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률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차) 기타 관련 법령

3.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증 등 첨부)

다. 과업 수행계획서

라. 과업 수행 조직표

마. 과업 예정 공정표

바. 보안서약서

사. 장비 검교정 성적서

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자.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4. 과업보고 및 결과보고

가. 착수보고 및 업무보고

1)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수행계획을 협의·수립하여 제출

3) 과업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

4)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의 적절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중간보고를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하여야 한다.(보고시점까지 수행한 자료를 기초로 현재 건축물의 잔존수명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대 잔존수명 평가 후 리모델링 공사 가능 여부와 가능한 경우 보수·보강 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공사비와 철거하는 경우 신축공사비 산출)

5) 계약대상자는 사업 중 사업추진점검 등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결과보고 및 성과품

1) 결과보고서는 전자파일(HWP, PDF, 전용 프로그램 사용시 원본파일 등), 기타 관련 영상 및 사진 등 원본 기록물과 결과보고서 책자 5부를 제출한다.

2)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가)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나)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다) 시설물 현황표

라) 참여 기술진 명단

마) 시설물의 위치도

바)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사)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아) 보고서 목차

3)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진단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마) 진단 수행 일정

4)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별도 제출 가능)

가)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가) 콘크리트 또는 강재(필요 시)의 내구성 평가

나)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나)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다)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라)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마)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7)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따른다.

8)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가)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나)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10)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2) 부록

가) 외관조사망도

나)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다)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라) 상태평가결과 자료

마)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

사)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아)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13) 현재 잔존수명과 보수·보강 시 기대 잔존수명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14) 보수·보강 시 리모델링 공사 가능 여부 판단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15) 보수·보강 공법을 시방서로 사용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6) 결과서 주요내용 요약본을 전자파일(HWP, PDF 등)로 별도 제공하여야 한다.

17) 모든 성과품에 대한 자료는 발주처 소유이며, 계약대상자는 해당 과업의 자료를 소유하거나 활용이 불가하다.

다. 기타 발주처가 과업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사항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5. 업무수행 지침

가. 기본원칙

1) 투입인력 기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1제1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건축분야에 따른 기술인력 8명(건축분야 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 이상 실투입되어야 한다.

2) 재료시험 최소 조사 수량

구분		표본층 수량기준 및 기준수량	재료시험 최소 조사 수량	비 고
콘크리트 강도		표본층(3개층)	16개소 이상	
철근배근탐사			23개소 이상	
탄산화 시험			7개소 이상	
부재단면의 규격			34개소 이상	
철근 부식도 시험			3개소 이상	
염화물함유량			3개소 이상	
변위·변형	기울기	건물외부 모서리 4개면	9개소 이상	
	부재변형	균열 및 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주요 부위	16개소 이상	

3) 본 자료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진단이 꼭 필요한 경우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신여자대학교(이하 “갑”이라 함)와 계약대상자(이하 “을”이라 함)간 사전 협의를 통해 업무에 포함한다.

4)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 “갑”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나. 업무수행의 일반적인 사항

1)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이후 갑이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수시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3) 용역과업의 일관성·책임성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 체계 확보를 위하여 “갑”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급이 가능하다.

4) “을”은 과업 인원에 대하여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며 과업기간 중 과업인원 미 배치 시 “갑”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을”은 업무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 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6) “을”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을”은 현장조사 및 시험에 대한 일정은 “갑” 학사일정에 따라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야간, 휴일 조사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8) “을”은「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 대상 건물에 관한 도면 및 관련자료는 “갑”이 제공하나, 미흡한 자료는 “을”이 과업 진행 중 발주처의 요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작업에 반영토록 한다.
10) “을”은 본 과업수행 중에 인사 사고 및 각종 장비의 파손이나 분실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장비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11) 과업 관련하여 과업의 범위 외 “갑”의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2) “을”은 본 과업을 잘못 수행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을 재실시하고,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의 제출 성과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오류, 누락 또는 오기 발견 시 추가작업은 “을”이 부담하여 시행한다.
14) “을”은 과업 결과 상기 하자로 인하여 “갑”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한다.
15) “을”의 귀책 사유로 사건/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때는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6)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자는 본 자료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착수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4)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

에게 있다.

5) 업무 내용의 비공개: “을”은 “갑”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특수조건 및 유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발주처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추진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가 수행하여야 할 당해 입찰의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제반업무의 수행
2) 과업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3) 발주처에 정기적인 수행보고
4) 발주처에서 공지하는 기간(시험기간 등)에 소음이 심한 작업금지
5) 계약대상자는 계약시 제시된 점검방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사양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사양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기타 발주처에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업무 및 사업 수행상 필요한 제반사항

다. 기타 유의사항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본 입찰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또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 및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이를 점검결과에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계약대상자가 과업지시서, 공고내용, 현장확인, 계약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과업과 관련한 제한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검토 소홀에 따른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다.
3) 과업지시서, 공고, 현장확인 등 관련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대상자에 있다.
4) 본 과업 목적상 당연히 진단되어야 할 것과 경미한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계약대상자가 책임 진단한다.
5) 근로기준법, 근로안전수칙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단을 시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은 계약대상자의 책임하에 이행한다.

가) 기타 출입자의 감시, 단속 철저

나) 화재 도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단속 및 사후처리 철저

다) 기자재 및 자재관리 철저

6) 진단완료 후 주변청소·정리 시의 폐기물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7) 기존 시설물의 손상이 발견되면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계약대상자는 진단과 관련 민원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9) 계약대상자는 진단 진행 전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그의 대리인, 안전 관리책임자, 고용원의 행위(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민, 형사상 기타 모든 책임(재해보상포함)을 지며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대상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1) 계약대상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대상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